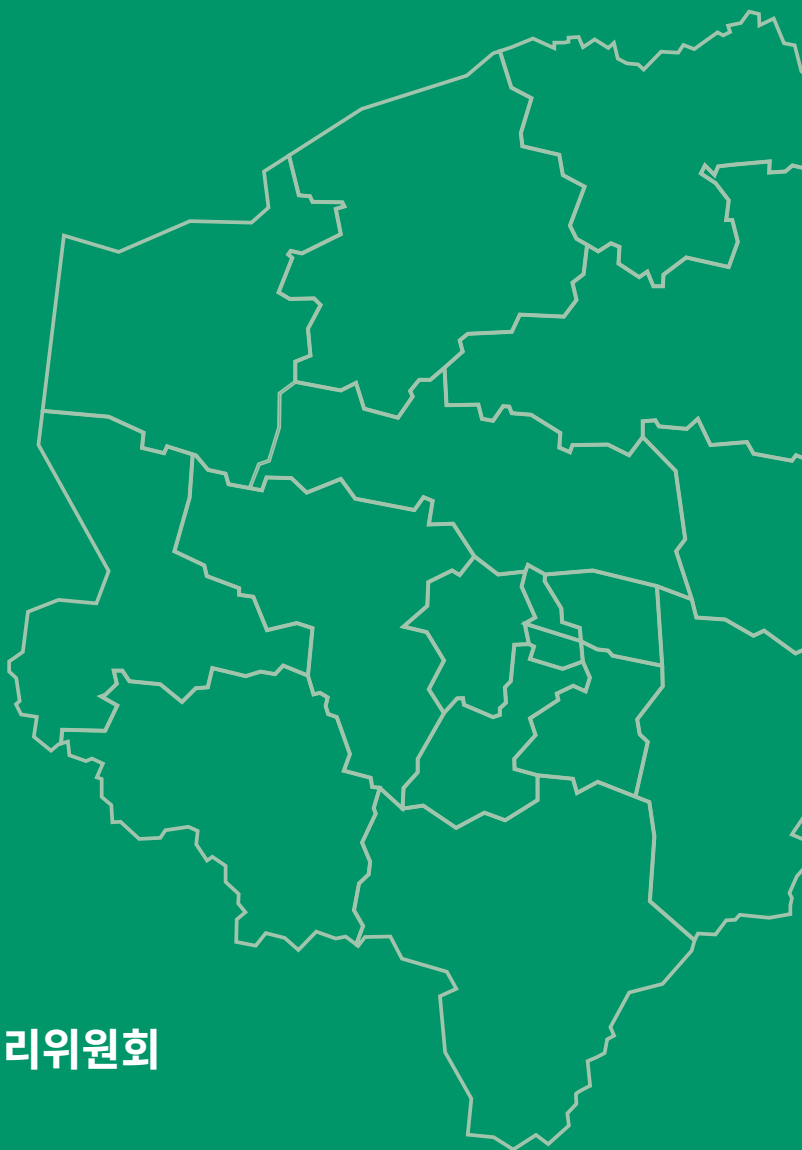


다시 뛰는 아산
더 행복한 시민

2025년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 간 사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발자취와 소중한 결실을 모아 「**2025년도 운영 상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를 근거로 2021년 1월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출범한 이후, 시민이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2024년 12월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며 어느덧 6년 차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되어, 아산시가 더욱 성숙한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오늘날 위원회가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 권익 보호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오세현 아산시장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위원회를 믿고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신 **아산시민 여러분의 신뢰**는 우리 시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진화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들이 소통과 중재를 통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를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아산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삶을 더욱 운택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 세밀함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단단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시민은 행복하고 공직자는 자부심을 느끼는
‘소통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김 경 태**

상임위원 **이 양 범**

상임위원 **장 래 영**

목 차

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개관

-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08
-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장점 11
- 3.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13
-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15

I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 1. 시민고충처리위원 소개 20
-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연혁 21
-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22
-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운영 23

II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 1. 고충민원 조사 활동 28
- 2.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국민권익위 협업) 30
-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대·협력·역량 강화 32
- 4. 타 지자체 벤치마킹 35

IV. 시민 권익 구제 사례

1. 2025년 고충민원 현황	38
2. 의견표명 사례	39
3. 합의조정 사례	70

V. 부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4
2.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0
3.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6



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개관



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개관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장점
3.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

○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 · 복잡화 · 전문화 경향

- 현대의 각 나라는 복지국가의 지향 등에 따라 행정기능이 증대 · 강화되고, 이로 인해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입법부나 사법부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정당 및 압력단체 등은 상대적으로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흡함.
- 특히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입법부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고,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통제 한계가 있음.

○ 기존 권익구제제도의 한계

- 행정작용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 중의 하나인 사법적 구제수단은 사후통제 수단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해서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의 국민권익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형식적 요건이 엄격한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

○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 · 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국민과 행정 양자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행정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함.
- 특히, 법규 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행정기관 스스로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 ·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 과거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국가의 통치행위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국가도 공공재 제공의 한 주체이며, 국민은 공공서비스 소비자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 고객중심의 행정가치는 정부가 국민인 고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 이를 위한 고객 헌장제도가 널리 확산 · 보급됨.

※ 고객헌장은 1991년 영국의 시민헌장에서 시작되었으며, 1994년 OECD산하 행정관리 위원회는 심포지엄에서 “서비스로의 행정, 고객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구호 아래 정부의 대응성을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제시함

○ 도입배경

-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시민의 권리침해, 불편, 부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 행위(부작위)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도 도입.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일반국민과 행정기관의 간격을 좁혀 보다 인간화하는 기능

- 일반시민은 행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고충처리위원회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과 시민 양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축소·완화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관계를 풀어 줌으로써 일반시민이 행정과 관계에는 겪는 고충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대응성 있는 행정을 도모하게 하는 기능.

○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통한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보완, 통제 기능을 통해 고충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규칙, 법률 등을 개선하는 기능.

○ 신속한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소송 제도와 비교하여 업무처리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을 조사·처리함에 있어 일정 부분 준사법적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고객지향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사소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용이.

○ 공정하고 중립적인 고충민원 조사

- 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제3자로서 민원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 성격상 공정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민원인으로 하여금 처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 운영 원칙

○ 독립성

- 독립성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되기 위한 핵심적 정의 원리임. 독립성에는 기구의 독립(권력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되며 충분한 위상 확보 필요), 기능의 독립(외부 압력에 자유로워야 하며 옴부즈만 결정을 위해 충분한 조사, 접근 등의 권한 부여는 전제조건, 충분한 예산 필요), 법적지위(4년 임기 보장, 보수, 선임절차 등)와 관련한 인적 독립이 필요함.

○ 공정성

- 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으로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정치적 활동, 고용 및 사업 관계와 거래활동을 삼가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해야 함.

○ 비밀보호

- 고충처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비밀보호를 할 수 있음. 정보의 보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하게 보호받는 것도 있으며, 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공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음.

○ 신뢰성 있는 심리 절차

- 고충처리위원회는 법·행정·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 모든 조사와 민원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기에 비공식적인 조사활동을 병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전자기록 포함 정부행정 문서, 파일, 시설 등 조사자의 역할로 별도의 통지 없이 기관·시설에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필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심의결과 권고,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헌법」

- ▲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 ▲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장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장점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한 업무처리와 시민의 접근성이 높아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의회 기능을 보강해주며, 경제적 부담이 없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는 장점이 있음

음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 비교

구분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성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간	제한없음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소극적 행위, 불편·부담 등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 접근성 용이	접근성 매우 어려움
비용	무료	행정소송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	경제적 부담 높음
구속력	언론공표, 의회 보고 등 간접강제로 실질적 구속력	기속력 (행정청에 대하여 구속력 인정)	기판력 (법원, 행정청, 국민에 대하여 인정)

공무원 적극 행정 면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조치의 경우 면책 대상에 해당함.

※ '적극 행정'이란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안내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83호 제3조, 2019. 6. 25. 제정)

○ 적극행정 확산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 3. 14.)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마련 적용하도록 함.

- 그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행정안전부, 2019. 8. 6. 시행) 및 적극행정 운영지침(인사혁신처, 2019. 5. 13.) 마련

※ 위 규정에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내용이 적용 되도록 2019년 6월까지 자체감사규정 개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 규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행은 적극행정으로 감사면책에 해당.

※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③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아산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3.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일반민원

- 일반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행정기관에 단순 행정절차, 형식요건등에 대한 설명요구, 일상생활 불편을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 요구 민원(민원처리법 제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고충민원 처리 구분 (감사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분	감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근거 법령 (처리기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7일+14일+7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42조 (60일+60일)
처리 주체 (입장차이)	지자체 공무원 제도적 한계 (민원인: 공무원 불신)	옴부즈만(시고위): 시민입장 우선 (비공무원전문가: 중립·공정성)
권익 구제 기능	범위 좁음	있음 (조사권,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

고충민원 신청

○ 방문, 팩스, 우편

- 방문: 아산시청 본관 1.5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 팩스: 041) 540-2017 (팩스 신청 시 사무실 확인 전화 요망)
-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1.5층)
- ※ 신청서 서식은 아래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온라인접수

- 아산시청 홈페이지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신청 안내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 문의전화: 041) 540-2243, 530-6232, 6233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민원분류 및 조사여부 결정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범위 및 권한

관할 범위	직무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개인	·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집단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 고충민원 제외 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ombudsman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ombudsman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처리절차



조사실시

- 고충민원의 조사는 당사자의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
-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 병행

조사결과 통지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제도개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권고, 의견 표명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여 처리한 경우

이송·각하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이송하는 건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에 따라 처리한 경우

취하

신청인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 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1. 시민고충처리위원 소개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혁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현황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운영

1. 시민고충처리위원 소개

- 구 성 :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 사무지원 1명
- 신 분 : 위촉직 (민간인)
- 임 기 : 2년 (1회 연임)
-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대표위원 김 경 태

위촉기간 2024. 12. 4. ~ 2026. 12. 3.
주요경력 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근 무 일 화, 수, 목



상임위원 채 수 정

위촉기간 2023. 7. 1. ~ 2025. 6. 30.
주요경력 前 아산시 공무원
근 무 일 월, 화, 수

○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신규 위촉 위원



상임위원 장 래 영

위촉기간 2026. 2. 13. ~ 2028. 2. 12.
주요경력 前 아산시 공무원
근 무 일 월, 화, 수



상임위원 이 양 범

위촉기간 2026. 2. 13. ~ 2028. 2. 12.
주요경력 前 충남도 공무원
근 무 일 월, 수, 금

※ 필요시 근무일정 조정 가능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연혁



- 2020. 05. 14.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09. 0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 2020. 10. 27.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천위원회 개최
- 2020. 12. 02. 아산시의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가결
- 2020. 12. 27. 아산시 초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상득, 신동택) 위촉
- 2021. 01. 01.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실 개소
- 2021. 10. 05. 상반기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2022. 02. 25. 2021년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2022. 12. 28.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동택) 연임 위촉
- 2023. 02. 27.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우수기관 수상
- 2023. 02. 27. 2022년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2023. 06. 29.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채수정) 위촉
- 2023. 12. 13. 2023년 충청·경기권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2024. 02. 29. 2023년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2024. 12. 04.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김경태) 위촉
- 2024. 12. 16.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025. 02. 26. 2024년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2025. 08. 14.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5. 11. 2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2025. 12. 26.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개최
- 2026. 02. 2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장래영, 이양범)위촉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자문위원 구성

-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

자문위원 역할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을 도모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 수행

자문위원 명단 (임기 : 2024. 1. 1. ~ 2025. 12. 31.)

-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

구분	감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변호사)	조혜연	충청남도 행정심판 위원
행정	이상득	아산시 먹거리재단 상임이사
사회복지	조성희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학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세무회계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건축(건축사)	이문규	아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토목 (토목설계사)	조대만	아산시 측량협회장
갈등관리 및 노무 (노무사)	함지호	한국 갈등관리 해결센터 이사
도로교통 (교통기술사)	이기종	교통영향 평가 협의회장
산업농림	김을식	(前) 아산시 공무원
고충민원 자문	김종재	(前)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운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는 시민권익 보호 기구입니다.

㉔ 시민고충처리위원



김경태

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비용 부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
-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㉔ 시민고충처리위원 역할

- ④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④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④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④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고충민원 신청 안내

참여마당

시민옴부즈만

- 시민 옴부즈만 소개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고충민원 사례
- 언론홍보 등
- 운영상황 공표

시민감사관 참여방

- 개요, 현황
- 제보 및 건의

익명신고 (갑질신고 제도개선 부조리)

공무원부조리신고

채용비리신고

공익신고

 익명 신고	 공무원 부조리신고
 공직자윤리법 관련자료	 청렴교육 관련자료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제보 및 건의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홈 > 참여마당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 고충민원이란?

아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결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 고충민원 제외대상

- 아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신청 방법

- 방문: 시청(본관)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1.5층) 감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실
- 팩스: 041-540-2017
- 온라인: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e-mail 신청: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신 후 이메일(kty0964@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41-540-2243, 041-530-6232, 6233

☞ 고충민원 신청서식 내려받기

고충처리 신청 게시판

☐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민원분류

내용검토 및 단순민원 부서 이첩



조사여부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기관)에게 조사개시 통보



조사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연장가능)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관계기관에 통지

총 117 건 (1/12페이지)

번호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
117	윤○○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6-02-15	1
116	박○○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6-02-04	3
115	서○○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6-01-23	3
114	장○○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6-01-07	3
113	김○○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5-12-31	5
112	이○○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5-12-11	1
111	김○○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5-11-18	1
110	오○○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5-10-25	2
109	이○○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5-10-22	2
108	정○○	☞ 본 게시물은 비공개 글입니다.	2025-10-20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1. 고충민원 조사 활동
2.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국민권익위 협업)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대·협력·역량 강화
4. 타 지자체 벤치마킹

1. 고충민원 조사 활동



고충민원 현장 조사



2025. 3. 5. 공장시설승인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2025. 4. 15. 건축 허가를 위한 도로 완화 심의 현장 확인



2025. 6. 9. 공동주택 신축지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2025. 11. 12.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관련 현지 확인

2.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국민권익위 협업)

운영 목적

- 도서·벽지, 농어촌 등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은 물론 도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문화적 환경, 특수한 상황과 처지로 권익구제 손길이 미약한 소위계층의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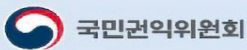
일시·장소

- 일 시 : 2025. 10. 24.(금) 10:00 ~ 16:00
- 장 소 :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1층 회의실
- 시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아산시 운영/천안, 예산 참여)
- 상 담 :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 조사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상담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해결!

일시 : 2025. 10. 24.(금) 10:00 ~ 16:00

장소 :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1층 회의실

문의 : 041-540-2015 (아산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고충민원을 상담

행정 문화 교육	(행정, 안전, 외교) 이물관리, 공무원직, 주민등록, 소아청소년, 출입국, 비자 (문화관광) 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 통상, 특허, 전파,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형사업 (농림) 농업(농어촌도로),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등·축산, 산림행정 (환경) 소음, 수질환경, 상수원·먹는 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도매, 수계기금 (해양) 해안수산, 공유수면, 해군항만
국방 보훈	(군사, 국방) 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 병무행정 (보훈) 유공자 등 특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여부, 정비사업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 (신고, 주택구입자금)
경찰	(경찰) 수사, 치안 방범·침화사위 (교통) 교통사고조사, 운전면허, 교통사고, CCTV, 과속방지턱 (특사청) 해당경찰, 특별사법경찰	도시 수자원	(도시) 도시개발도지,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수자원) 하천관리, 하천 점사용, 댐 관련 피해보상
재정 세무	(재정) 국유지, 조달계약, 공정위, 담배소매인, 금융공공기관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교통 도로	(도로) 도로(전통도로, 방음벽), 도로점용, 토지 보상 (교통) 철도, 항공피해보상(전송도로, 항공도로), 교통운수
복지 노동 방출 통신	(복지) 복지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건위생 (노동) 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전, 임금채권보장 등 (방출) 통신주 이설, 무제한		

생활법률, 사회복지, 서민금융, 지적, 소비자피해도 상담

사회복지	위기가정, 가족돌봄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긴급 생계비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아름다운"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조세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상담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대·협력·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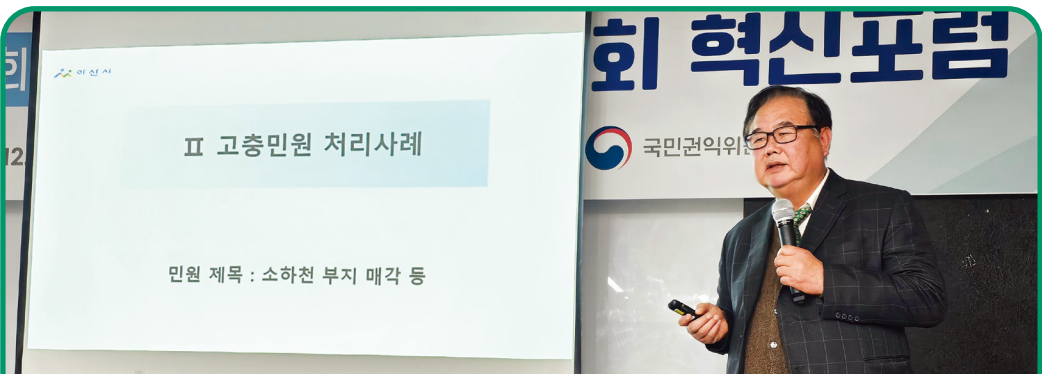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 포럼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포럼



제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포럼



제4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포럼-고충민원 처리사례 발표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목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간 교류 및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권익증진 도모

개요

- 일 시 : 2025. 6. 26.(목) 10:00 ~ 16:0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 대 상 :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직원
- 내 용 : 고충민원 제도 개요, 외부 강사 초빙 강의, 권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분임 활동 및 사례 발표 등



2025. 6. 26.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3.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 요

- 일 시 : 2025. 4. 9.(수) 14:00 ~ 16:00
-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대 상 :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직원
- 내 용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내용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우수 처리사례 발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제도에 관한 논의 등



2025. 4. 9.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4. 타 지자체 벤치마킹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 및 제주갈등 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



제주 갈등 포럼 참석

IV

시민 권익 구제 사례



IV

시민 권익 구제 사례

1. 2025년 고충민원 현황

2. 의견표명 사례

3. 합의조정 사례

1. 2025년 고충민원 현황



1.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단위: 건)

구분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이송·각하	상담해결·안내	조사중
2025년	70	-	11	3	17	39	-

2.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수용 현황

(단위: 건)

구분	소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계	수용	불수용	계	수용	불수용	인용
2025년	14	-	-	-	11	9	2	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아산시 수용률 85.71%로 실효성 확보

3.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소계	일반행정	복지노동	재정세무	주택건축	도로교통	산업농림	기타
2025년	70	10	7	-	31	6	6	10

4. 고충민원 접수 경로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소계	방문	읍·면·동 현장 상담	홈페이지/이메일	우편/팩스
2025년	70	45	-	19	6

2. 의견표명 사례

도로사용토지 매수보상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 소유의 충남 아산시 00동 100-14 대 23㎡(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가 단순히 도로 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비법정 도로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토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신청인은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으니,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에 대하여 매수 보상을 하여 달라.

나. 당사자

- 신청인 : 정○○
- 피신청인 : 아산시장 (○○○○○과)

2. 결정

가. 주문

피신청인에게 도로로 사용 중인 신청인 소유의 충남 아산시 00동 100-14 대 23㎡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이유

1) 사실관계

- ① 신청인은 ‘이 민원토지’를 1995년 6월 10일 매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민원토지’는 2012. 11. 30. 지정 고시된 ‘이 민원도로’에 접해있어 비록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이 민원도로’와 함께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마을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
- ② 한편, ‘이 민원토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으며, 우·오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관리·보수하고 있다.

2) 판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

용 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등 다수 참조).

-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법정도로인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도로구역 밖의 토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종래부터 이 민원토지에 피신청인이 우·오수 배수시설 및 아스콘 포장한 후 이 민원토지를 여전히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토지를 관리·보수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토지의 사실상 점유 관리주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민원토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로 이용될 것이 쉽게 예견되는 반면 그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하여 부당하게 제약받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를 조속히 매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생 축하금 부지급 이의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아파트 매매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경기도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로 사실상 아산시에서 주거를 같이하며 첫째 자녀 권00(이하 '민원 자녀'라 한다)를 출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출생 축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의「아산시 출생 축하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민원 자녀의 부모가 함께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나 민원자녀의 모인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으나 추후 배우자가 아산시로 전입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출생 축하금을 재신청하니 이번엔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신청 기한 경과(6월)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최초 신고 후 바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신청기한 등 주요 내용을 안내받았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였음에도 단순히 조례 개정으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생 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반하니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나. 당사자

- 신청인 : 최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 (○○○○과, ◎◎◎과)

2. 결 정

가.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첫째 자녀에 대한 출생 축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 표명 한다

나. 이 유

1) 사실관계

-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1) 2022. 3. 29. 신청인이 아산시로 전입
 - (2) 2023. 7. 23. 민원자녀 출생
 - (3) 2023. 7. 27. 출생 축하금 신청
 - (4) 2023. 12. 26. 조례개정 (거주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신설)
 - (5) 2024. 11. 20. 배우자가 아산시로 전입
 - (6) 2025. 2. 출생 축하금 재신청
- ②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자녀는 부모인 신청인 및 배우자와 함께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배우자는 주소지 인근 소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이다.

- ③ 신청인은 2022. 3. 29. 아산시로 전입하였고 배우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아산시로 전입신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경기도 평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신청인과 배우자는 신흠부부로 아산시에 함께 실 거주하며 2023. 7. 23. 민원자녀가 출생하였다.
- ④ 피신청인에게 민원자녀에 대한 출생 축하금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조례(2023. 12. 26. 개정되기 전)에 따라 민원자녀의 부모가 함께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나 배우자의 미전입으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지만 향후 배우자가 전입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⑤ 신청인은 2024. 11. 20. 배우자가 아산시로 전입한 이후 피신청인에게 출생 축하금 재신청하니 이번엔 2023. 12. 26. 조례가 개정되어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⑥ 피신청인은 조례 개정에 따른 출생 축하금의 신청 기한에 대해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에 출생 축하금의 신청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충분히 홍보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으로 부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 ⑦ 2023. 12. 26. 개정되기 전·후 조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변경 전(시행 2023. 9. 15.)	변경 후(시행 2023. 12. 26.)	비고
제2조 (용어의 정의)	4. “가정”이라 함은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영아의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3조 (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 신고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제6조 (지원 신청 등)	-	⑤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신설

2) 판 단

① 관계법령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2. 「아산시 출생 축하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② 판 단

민원자녀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과 배우자는 민원자녀를 출산하기 10개월 전부터 신청인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는 직장이 인근에 소재하고 신혼부부로 사실상 아산시에 거주하며 민원자녀를 출산하였던 점 ② 출생 축하금을 최초 신청할 당시에 배우자가 아산시로 전입만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조례 개정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한을 신설하고, 종전과 달리 민원자녀의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거주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에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인 역시 안내받지 못했으며 만약,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인의 경우 민원자녀와 함께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요건이 충족되어 배우자가 아산시로 전입하기 이전이라도 기한 내 신청이 가능했다는 점 ③ 조례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출생 축하금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이라는 점 ④ 우리나라의 2021년과 2022년 합계 출산율이 각각 0.81명, 0.78명이며,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및 아산시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민원자녀에 대한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나아가 출생 축하금은 출산 장려의 시책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로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출생 신고 시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결 론

- 그렇다면, 민원자녀에 대해 출생 축하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충남 아산시 00동 2040 소재 가설건축물(이하 ‘민원 가설건축물’이라 한다)과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비와 햇빛가림용으로 목조 구조의 기둥과 깨진 스토틈의 천장 구조로 민원 가설건축물에 증축된 시설(이하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물주 배우자인 신청 외 김00과 2021. 5. 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원 가설건축물과 민원 시설이 3년 이상 방치되고 노후화로 훼손된 지붕을 판넬로 얹은 것에 불과한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며 민원 시설에 대해 신축으로 2024년 4,59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사업 부진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등 어려운 실정이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달라.

나. 당사자

- 신청인 : ○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 (△△과)

2. 결 정

가.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충남 아산시 00동 2040 소재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한 불법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유로 2024. 11. 22. 4,59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상 물건을 신축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로 경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이유

1) 사실관계

- ① 피신청인이 축조 허가한 민원 가설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주 : 강00
 - (2) 대지위치 : 충남 아산시 00동 16-10
 - (3) 건축면적 : 85.9㎡
 - (4) 건축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5) 허가일자 : 2004. 4. 1.
- ② 신청인은 2021. 5. 31. 민원 가설건축물과 민원 시설에 대해 건축주 강00의 배우자인 신청 외 김00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00종합타일이라는 상호로 타일 판매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 ③ 신청인은 민원 가설건축물과 민원 시설에서 타일 판매 영업장으로 운영하던 00 타일이 이전하면서 3년 이상 오랫동안 방치되어 노후화로 훼손되어 우천시 영업장으로 비가 들이치는 등으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인 2022년에 민원 시설에 비 가림으로 지붕을 보수하며 판넬로 엮었고 전면과 측면은 종전과 같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④ 피신청인은 민원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 신고 미이행으로 2024. 11. 22. 건축주인 신청 외 강점 금에게 이행강제금 299,000원을 부과하였고, 민원 시설은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 4,596,000원을 부과하고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까지 병행하였다. 이때 민원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으로, 민원 시설은 신축으로 각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 ⑤ 민원 가설건축물 및 민원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부과 년도	위 치	시정 의무자	위반 내용	구조 (용도)	면적	이행 강제금 (원)	행위 시기
민원 시설	2024 년	아산시 00동 2040	오00	신 축	목조 (근린생활)	28.8㎡	4,596,000	2022 년
민원 가설 건축물	2024 년	아산시 00동 2040	강00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	시멘트 블럭 (근린생활)	83.2㎡	299,000	2007 년

2) 판 단

①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허가)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② 판 단

피신청인은 민원 시설에 대해 위반 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경제적 사정만으로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① 민원 시설은 전면과 측면이 모두 개방되고 목조 구조의 기둥에 지붕을 얹어 본체인 민원 가설건축물의 비가림 등 처마를 주 용도로 민원 가설건축물에 붙어있고 민원 시설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없어 민원 가설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봄이 타당해 보이나 이를 신축 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② 민원 시설은 신청인이 입주하기 이전인 2016년 이전부터 존치하였고 폐점으로 3년 이상 오랫동안 방치·훼손되고 노후화로 보수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민원 시설과 민원 가설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니 당시 건축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인으로서의 영업장 시설 보호를 위해 달리 대체 방안이 없어 종전대로 민원 시설을 보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민원 시설에 대해 신축 건축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신축을 가설건축물로 결정하여 재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 그렇다면, 종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업단지 구역내 존치토지에 대한 경계조정 등 지적정리 요구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00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공부정리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하여 민원사업 구역 내 존치토지인 충남 00시 00면 00리 304-8외 9필지, 총면적 7,996㎡(이하 '존치토지'라 한다)에 대해 면적, 지목, 등기사항에는 변동 없이 정형화를 위해 단순히 지적 경계 및 위치만 정리하고자 신청인과 존치토지 소유자인 (주)000와 구역경계조정 협약을 체결하고 계획변경고시까지 하였으나 준공단계에서 존치토지가 가압류·보전처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이에 존치토지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제출하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담보하고자 하니 존치토지를 확정측량성과 경계에 맞추어 경계·위치 정정 등 지적정리로 민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나. 당사자

○ 신청인 : 박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 (△△과, □□□□과)

2. 결 정

가.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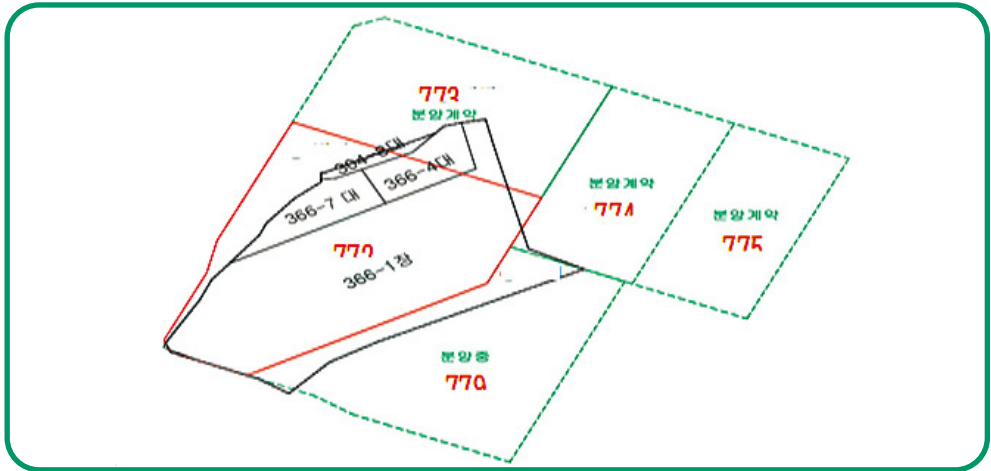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시행하는 000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내 존치토지인 충남 00시 00면 00리 304-8외 9필지, 총면적 7,996㎡에 대한 모든 권리설정 이해관계인 및 토지 소유자의 진정성과 효력을 갖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존치토지의 정형화를 위한 경계조정 등 지적정리를 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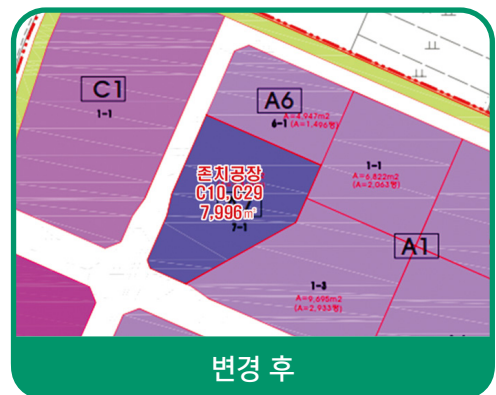
1) 사실관계

- ① 민원사업은 00디스플레이시티와 연계하여 전략산업성장기반 및 지역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충청남도 00시 00면 00리와 00리 일원에 총면적 421,124.1㎡ (제1공구 : 산업시설 342,381.1㎡, 2공구 : 지원시설(택지) 78,743.0㎡)에 대해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5. 9. 12. 까지이다. 현재 공정을 100%로 완료 단계이고 국내·외 15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률 70%이나 존치토지에 대한 경계조정 등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시기가 지연 되고 있다.
- ② 민원사업 관련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 2020. 12. 30. 민원사업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0-558호)
 - (2) 2023. 8. 28. 존치 토지에 대한 구역경계조정 합의 체결
 - 신청인과 존치 토지 소유자인 (주)000 상호 합의 체결 (4필지 7,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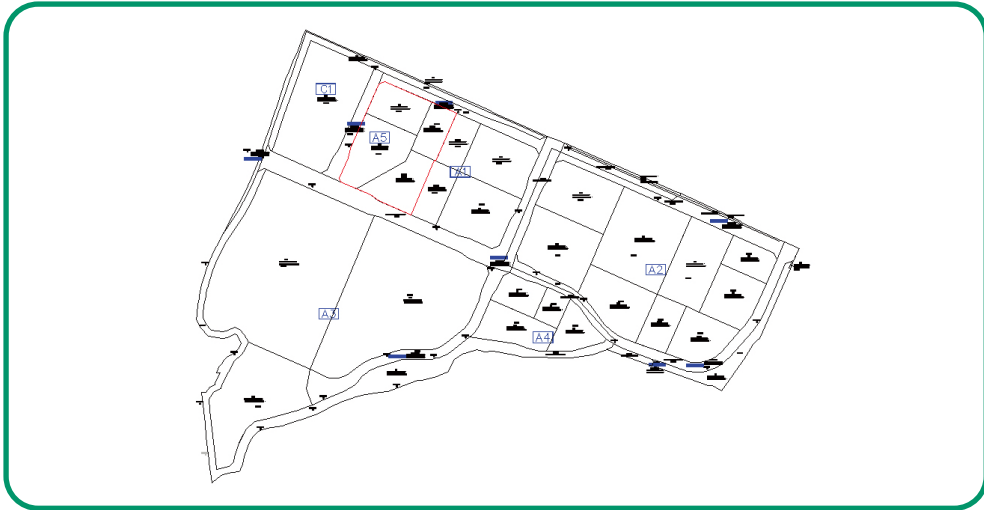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원지번	지목	대장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00리	304-8	대	185	주식회사 00000	경기도 00시 00구 000로 225-18, 6층
2	00리	366-1	장	6,450		
3	00리	366-4	대	645		
4	00리	366-7	대	716		
합 계		4필지		7,996		



- (3) 2024. 4. 16. ~ 2024. 7. 24. 존치토지 가압류 등기
 - 채권자(4곳) : (주)000, (주)00전자, (주)00에이, 00은행
- (4) 2024. 8. 30. 민원사업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4-417호)
 - 존치시설 배치계획을 종전 경계와 달리 정형화하여 변경승인 함



- (5) 2024. 9. 20. 존치토지 보전처분 등기(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2024 합000)
- (6) 2024. 12. 20. 민원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존치토지 가압류로 인한 공구 분할 (1-1, 1-2공구)
- (7) 2025. 5. 16. 지적확정측량 성과 교부(아산시 00과)
 - 확정측량성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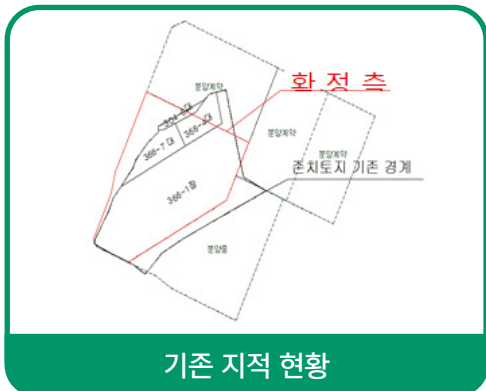


- 존치토지 확정측량 성과 (10필지, 7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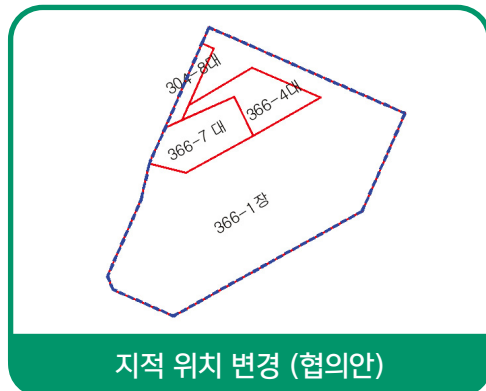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현 토지대장			확정측량 교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00리	304-8	대	127	신규지번	장	7,996	-
2	00리	304-15	대	58				
3	00리	366-1	장	2				
4	00리	366-14	장	5,158				
5	00리	366-15	장	237				
6	00리	366-16	장	1,040				
7	00리	366-17	장	13				
8	00리	366-4	대	355				
9	00리	366-18	대	290				
10	00리	366-7	대	716				
합 계		10필지		7,996	1필지		7,996	-

(8) 2025. 8. 18. 토지분할 (1-1공구, 1-2공구, 존치토지)

- 사업 완료 시 산업단지와 존치토지(정형화)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정리 신청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부합되도록 토지분할 완료



기존 지적 현황



지적 위치 변경 (협의안)

2) 판 단

① 관계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 (2)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대법원 2010. 10. 14선고, 2010다37059 판결 등 참조)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② 판단내용

피신청인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해당 오류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공부를 정정하는 것으로,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신청 요건인 토지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유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존치 토지의 정형화된 확정 측량성과 경계에 맞추어 사업시행자와 존치토지 소유자 간 소유권 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소유권 이외 권리를 해제한 이후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우선 타당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존치토지에 압류 및 보전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권리관계 정리 및 소유권 일치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우선 이 민원 존치토지의 정형화에 따른 경계부를 중심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요청하므로 살펴보면,

민원 존치토지의 발생은 사업지구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용과 무차별 철거로 인한 국민 자산의 총량적 손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장물 보호로 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고, 존치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섬처럼 남아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존치 시 사업지구 내 경계부의 토지 정형화를 위한 조정은 사업구간의 토지의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부정형 한 경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토지 자원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이라는 도시개발사업 본래의 목적에 반하게 되므로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 민원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되어 현재 공정률 100%로 완료 단계에 있고 민원사업 지구 내 제1공구는 총 15개의 국내·외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율 70%이며, 특히 존치토지와 인접한 경계 조정 후 교환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개발계획상의 A1-6, A1-7-1 등의 필지가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점, 이들 존치토지와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선의의 수 분양 계약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분쟁이 우려되는 점, 이 민원 존치 토지에 대한 구역경계조정 협약은 2023. 8. 28.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2024년 4월부터 9월에 걸쳐 이루어진 이 민원 존치토지의 가압류 및 보전등기 설정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여 비록 그 책임이 전무하진 않으나 신청인 또한 피해자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 정리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신청인 또한 관련 경계부 조정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 민원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지적을 폐쇄하고 사업구역 내 새로운 지적의 생성이 필수적으로 노정되

어 있는 점,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이라 하더라도 존치 토지에 대한 경계부 조정에 따른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은 토지이동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또한 이 민원 개발사업이 원할 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은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확정 판결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경계변경으로 인한 이해 관계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민원 존치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시행자 간에 2023년 8월 28일 구역경계조정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며 나아가 경계조정 후에도 면적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이는 어느 당사자도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음을 의미하며, 법률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적도 정정 등의 청구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와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2016다1793 판결)하고 있는 점, 법제처는 지적공부의 정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행위는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며,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고 하였고, 민원 존치토지의 경계 조정은 정확히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제처가 명시한 바와 같이 "토지의 이동"으로 분류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계변경이 산업단지 내 토지의 "정형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민원 경계조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의 적용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산사태등이 일어나 토지 경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적공부 정정으로 수정하는 것처럼 법률의 해석상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해 등록사항이 실제와 달라진 경우도 사후적 사정 변경론을 적용하여 지적공부의 정정 대상으로 인정하는 점, 토지이동의 면적의 증감이 없고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어 절차적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으며 기존 권리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며, 오히려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존치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설정 이해관계인 및 토지 소유자의 진정성과 효력을 완벽히 갖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존치 토지의 정형화를 위한 지적 정리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 그렇다면, 존치토지의 경계조정 등 정형화를 위한 지적정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물 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충남 00시 00면 00리 이장으로, 충남 00시 00면 00리 167-1 전 27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2층 건축물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4. 12. 27. 사용승인 되었는데, 사용승인 당시 이장이던 최00(이하 '최00'라 한다)의 착오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민원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소유자가 최00로 잘못 기재되어 현재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니, 덕암리 마을회 소유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덕암리 마을회로 정정해 달라.

나. 당사자

- 신 청 인 : 이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과)

2. 결 정

가. 주 문

피신청인에게 충남 00시 00면 00리 167-1 소재 건축물(연면적 163.64㎡, 마을회관)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00리 마을회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이 유

1) 사실관계

- ① 이 민원 건축물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으로 건축신고 없이 건축되어 1994. 12. 7. 사용승인 되었으며, 연면적 163.64㎡, 용도는 마을회관, 소유자는 "이장 최00"로 기재되어 있다.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대장 주요 현황 >

대지위치	충남 00시 00면 00리 167-1			구조/ 층수	조적조 / 지상 2층		
대지면적	271㎡	건축면적	93.6㎡	연면적	163.64㎡	주용도	마을회관
건축 허가일	※ ※			사용 승인일	1994. 12. 27.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구분	층별	용 도	면적 (㎡)	성명 (명칭)	주민 (법인번호)	변동일	
주1	1층	마을회관	93.6	이장 최00	460213- 1*****	-	
주1	2층	마을회관 (회의실)	70.04				

-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85. 5. 2. 매매를 원인으로 덕암리 부락 회로 등기되었고, 2025. 8. 2. 덕암리 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민원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충남 00시 00면 00리 167-1	전	271㎡	00리 마을회

- ③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최00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자는 덕암리 마을회로 기재되어야 하나 착오에 의해 당시 이장인 망인 최00로 기재되었고, 상속인들인 배우자 이00, 자녀 최00, 자녀 최00은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00리 마을회로 소유자 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 ④ 00리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자를 00리 마을회로 변경하는 마을회의를 2025. 8. 2. 개최하여 37명 참석에 37명 찬성으로 소유자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과세 내역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덕암리 부락 회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라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① 관련법령 및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② 판단

① 이 민원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마을회관 용도의 건축물로 되어 있는 점,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덕암리 마을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망한 최00의 상속인들이 확인한 공증서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는 00리 마을회로 기재되어야 하나 착오에 의해 당시 이장인 최종구로 기재되었기에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소유자를 00리 마을회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과세 내역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자는 00리 부락회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라 마을회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점 ⑤ 이 민원 건축물은 미등기 건축물인데, 현 상태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자를 00리 마을회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이 없음에도 등기상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충남 아산시 00면 00리 산5-25 임야 659㎡(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이 민원 토지에 단독주택(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산지전용 협의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접한 현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포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민원 도로는 오랫동안 공용의 도로로 아산시에서 개설 및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00리 전·현직 이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공부상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한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니,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나. 당사자

○ 신청인 : ○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과)

2. 결 정

가.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청한 충남 아산시 00면 00리 산5-25 토지의 건축신고 (신축/단독주택)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이 유

1) 사실관계

- ① 이 민원 토지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이 민원 도로와 접하여 있고, 신청인의 배우자인 신청 외 신00이 2019. 9. 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인은 2024. 8. 2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공유지분 10분의 1로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였다.
-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4. 10. 10.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산지전용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민원 도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제1호 마목 10)에 따른 도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이 개설한 도로임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25. 1. 17.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 ③ 이 민원 건물 건축신고 신청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대장 주요 현황 >

대지위치	충남 아산시 00면 00리 산5-25	대지면적	659㎡
지역.지구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주용도	단독주택 (1세대)	규모/구조	지상1층 / 경량철골조
건축면적	89.8㎡	연면적	89.8㎡
건폐율	13.62%	용적율	13.62%

- ④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대해 관계기관인 아산시 00면장에게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00면장은 ‘00리 산 5-16에서 산 5-13에 이르는 이 민원 도로는 1976년부터 도로의 형상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문서가 10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기에 해당 도로의 개설 사업의 관련 자료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 ⑤ 신청인은 2025. 9. 27. 이 민원 도로에 대해 00리 전직 이장(김00)과 현직 이장(김00)으로부터 이 민원 도로가 2000년경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아산시에서 확·포장하였고, 도로 유지 보수도 하는 00 저수지 둘레길로 사용 중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⑥ 관계기관(아산시 00과장)은 2021년 부터 2023년에 시행한 00면 00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 민원 도로와 연결된 “기존 콘크리트 도로”를 정비한 후 덧씌우기 사업¹⁾을 하고, 이 민원 도로 구간은 덧 씌우기 사업에서 배제되어 종전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의 도로로 유지하고 있다.



2021. 6. 00리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참고도

1) 피신청인의 “00면 00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기본 및 시행계획 요약보고서(2021. 06.)”에 따르면 당시 600m 사업구간 중 A구간(국도 39호선 인접부 ~ 00교(마을회관 앞 교량까지 300m, 폭 3m)과 B구간(마을회관 앞 교량 ~ 00리 32-2 대지, 폭 2m)로 나누어 사업하였는데, B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을 계획되었음, 따라서 당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00리 32-2 대지(당시 사업종점)까지 한정되었으나, 기존 콘크리트 도로는 00교에서 이 민원 도로의 현재 종점(이 민원 토지를 지나 약40M 지점)까지 동일한 형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⑦ 네이버 지도 검색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는 위 “바”항의 00리 마을만들기 사업 B구간 마을 도로와 동일한 00로 681번길로 표기되어 이 민원 토지를 지나 00 저수지를 거쳐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 민원 토지를 지나 약 40m 구간에 이르는 00 저수지 수변 근접지까지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어지며, 그 이후 연결 구간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위성지도 (00로 681번길)

- ⑧ 이 민원 토지와 접한 이 민원 도로는 폭 2m, 연장 100m, 약 18~20c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의 규모로 00 저수지 둘레길인 현향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주변에 특별히 개발행위를 하거나 특정 건물 등 별도의 시설은 없다.



도로정비(뒹썩우기) 종점구간



00저수지 현향도로로 사용



민원도로 콘크리트 두께

2) 판 단

① 관련법령 및 규정

- 「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산지관리전용허가기준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② 판단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민원 도로가 공공기관이 개설한 공공목적의 도로라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① 00면장은 이 민원 도로에 대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76년부터 도로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 개설 관련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확인 은 보존문서가 10년이 경과하여 해당 도로의 개설 사업의 관련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 하고, 이곳 전·현직 이장으로 부터 아산시장이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하였고 현재도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점, ② 민원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사업 관련 서류의 부재가 피신청인의 과실이나 책임이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서류의 부재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도로의 공공사업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사유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공평리 마을사업에 포함되어 기존 콘크리트 도로를 정비한 후 덧씌우기 사업을 하였고 당시 사업지구 연장선 밖에 있는 이 민원 도로는 종전대로 콘크리트 포장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18~20cm에 이르고 있어 구조나 규모 측면에서 민간이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익이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④ “00면 00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기본 및 시행계획 요약보고서(2021. 6.)”에 따르면 당시 사업 구간 중 B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정비 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당시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마을 안길과 동일한 구조(두께 약 20cm, 폭 2m)로 현재의 종점(이 민원 토지를 지나 약 40M 지점으로 00 저수지 수변 경계에 이르는 지점)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B구간 종점 이후 이 민원 도로를 일반인이 다른 목적으로 시공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도로를 민간이 개설하였다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치를 가진 민간 개발 사업을 수반하여야 할 것인데 주변에 아무런 민간 개발사업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민간 개설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이 민원 도로는 00리 저수지와 접해 있어 저수지 관리를 위한 차량 및 보행자가 진출입로로 오랫동안 이용해 오고 있어 공공목적의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⑦ 이 민원 토지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민원 건축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이 민원 사유지 소유자 등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특별히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 위원회 심의(도로완화) 부결 이의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2023. 8. 29.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아산시 00동 000-00외 1필지를 매수하여 피청구인에게 2024. 4. 24. 건축위원회 심의(도로완화)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4. 6. 4.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완화 **취지와 달리 단지화 우려가 있으므로 폭 4m 도로를 확보하여 도로 지정 절차**를 거치라며 심의 결과 부결 통지를 받았음 이에 신청인은 본 신청지는 ◇◇지방도로에서 부터 약 250m 길이의 현행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도로로 대부분 4m 이상의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만 3.5m 폭으로 포장된 현황 도로이며 신청지 인접의 4가구 개별 단독주택은 위 도로를 이용하여 도로 완화 심의를 통해 허가를 득하고 완공하였으며 본인이 신청한 장소는 기 허가지와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서로 가깝다는 이유로 단지화를 우려하여 심의를 부결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함

나. 당사자

○ 신청인 : ○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과, □□과)

2. 결 정

가.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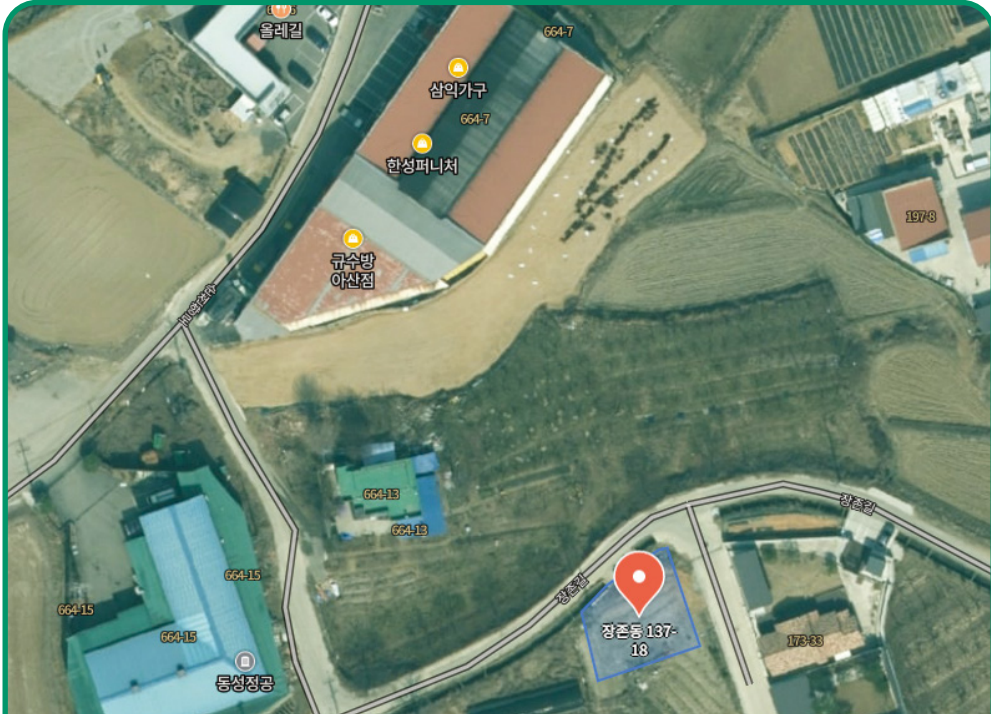
피신청인에게 아산시 00동 000-00번지의 1필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위원회(도로완화) 재심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이 유

1) 사실관계

- ① 신청인은 주택신축 목적으로 2023. 8. 29. 아산시 00동 000-00 번지 전 328㎡를 9,000만 원에 0리 000-0번지 96㎡를 2,700만 원 도합 424㎡를 1억 1천 7백만 원에 매입하였다.
- ② 2024. 4. 24.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도로 적용완화를 위하여 허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허가과에서는 건축심의 부서인 건축과에 건축심의 상정 요청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2024. 6. 3. 심의 결과 적용의 완화 취지와 달리 단지화 우려가 있으므로 폭 4미터 도로를 확보하여 도로 지정 절차를 거치기 바란다고 부결 통보하였다.
- ③ 신청인은 심의 부결됨에 따라 도로를 확장코자 인접 000와 000-0번지의 토지 약15평을 지인 등을 통해 매입 코자 접촉하였으나 평당 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불가했다고 주장함.

- ④ 본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바 본 신청지는 ◇◇◇지방도로에서 약 250m 길이의 콘크리트 포장 된 현황도로이고 신청 도로의 대부분이 건축법으로 허용되는 4m 이상의 도로폭으로 되어있으며 일부 도로 약 35m 부분만 3.5m 정도로 되어있어 일반 차량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어 보였음. (본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시점인 2025. 4. 15. 현재 4m이하의 도로였던 35m부분도 4m 이상으로 확장 포장되어 있었음)



신청지 현황



도로폭 (확장하여 4m이상 확보)



신청지 옆 도로완화 심의로 신축주택

- ⑤ 또한 본 신청지와 인접 토지인 0리000-0번지의 3필지는 이미 적용완화 심의 조건부 승인 또는 동의로 건축이 신축되어 사용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접지 도로 완화 심의 신청 및 심의 내역

위치	심의일자	신청인	안건 상정 시 허가부서의 검토 의견	심의결과	비 고
00동 000-0	2014. 12. 30. (2014 -15차)	이○옥	- 상기 통행로는 마을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콘크리트 포장된 관습도로임에 따라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7의2 및 아산시 건축조례 제18 제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가 가하다고 사료됨	조건부 동의	2016. 4. 29. 사용 승인
00동 000-0	2022. 11. 16. (2022 -35차)	이○○	- 건축주 이○은 인접 필지인 000동 000-0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적용완화 심의를 신청하여 2015년도 건축위원회 조건부 동의 의결되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금회 본인 소유의 인접 필지000-0외1필지에 동일한 사유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적용완화 신청한사항임 - 현재 마을주민들이 사실상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해당부지의 획지 계획을 고려할 때 연접개발로 단지와 우려가 예상되며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기준에 미달한 도로로 적용의 완화를 득할시 이를 이용하여 향후 다수의 완화심의 접수 예상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주변 대지 및 건축물의 영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 주시기바람.	부 결	이후 재신청 사항없음
00동 000-0	2021. 12. 8. (2021 -33차)	이○○	-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2 및 「아산시 건축조례」 제18 제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조건부 동의	2024.2.5 사용승인

위치	심의일자	신청인	안전 상정 시 허가부서의 검토 의견	심의결과	비 고
장존동 137-8	2019. 5. 9. (2019 -12차)	이○○	- 해당도로는 이스콘 포장상태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 - 도로 완화 심의하고자 하는 도로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관리청 인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농업생산 기반 시설부지이므로 농어촌 정비법 제23조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도로 지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상 불가의견을 받음 - 금회 신축부지 인접필지 00동 000-0번지는 동인인이 이○○이 건축신고를 득한후 노○○에게 매매하였고 금회 신청지 137-8번지는 이○○이 2019. 2. 28 윤○○에게 매매 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심의 신청한 사항 - 인접토지 건축신고 건축주변경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000-0번지도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단독주택 다지화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 결	2019-13차 재신청
	2019. 6. 13. (2019 -13차)	이○○	- 2019-12차 심의신청하여 같은 사유로 부결	부 결	진행사항 없음
장존동 137-9	2016. 6. 15. (2016 -15차)	이○○	상기 도로는 장존동 일대 현황상 콘크리트 포장상태로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2 및 「아산시 건축조례」 제18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부 결	20년에 다시 신청함

위치	심의일자	신청인	안전 상정 시 허가부서의 검토 의견	심의결과	비 고
장존동 137-9	2020. 1. 8.	양○○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2 및 「아산시 건축조례」 제18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안 의결	2021. 3. 4 사용승인
장존동 137-18 외1필	2024. 5. 23. (2024 -20차)	△△△△	금회 건축심의(적용완화) 신청도로는 현재 마을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해당부지의 획지 계획을 고려할 때 향후 연접 개발로 단지화 우려가 예상되며 건축법에 정한 도로의 기준에 미달한 도로로 적용의 완화를 득할 시 이를 이용하여 향후 다수의 완화심의 접수가 예상됨.	부 결	2024 - 31차로 이○성 으로 재신청
	2024. 8. 26. (2022 -31차)	이○○	적용의 완화 신청도로는 현재 마을주민들이 사실상의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의 획지계획을 고려할 때 향후 연접개발로 단지화 우려가 예상되며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기준에 미달하는 도로로 적용의 완화를 득할 시 이를 이용하여 향후 다수의 완화신청 접수가 예상됨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주변 대지 및 건축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람	부 결	이후 진행 사항 없음

2) 판 단

① 관련법령 및 규정

- (1) 「건축법」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제5조(적용의 완화)전부
-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 (3) 「아산시 건축 조례」 제18조(적용의 완화)
- (4) 소비자 기본법
- (5)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10073 (2024. 9. 27.개정)]

② 판단내용

(1) 본건 건축위원회에 상정 심의 부결된 부결 사유인 적용완화 취지와 달리 단지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적 사항을 살펴보면

가)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는 법 제5조1항에 따라 완화 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제7의2에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라고 규정하며 「아산시 건축조례 제18조3항 1호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적용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는 허가권자는 법 제5조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1호 가목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과, 나목에는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건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 및 도시미관이나 환경에도 지나치게 해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2) 본 주택신축을 위한 도로 완화 신청이 완화 취지와 다른지 살펴보면.

가) 신청인은 베트남인으로 이국땅인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유하고자 2023년 본 토지를 매입하였고 신청인의 취지 또한 주택신축이 목적인데 완화 취지가 맞지 않다는 피신청인이 의견은 부당해 보인다.

나) 또한 집단화 우려가 있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이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설사 주변에 몇 가구의 주택이 더 신축되어 교통량이 다소 증가한다 하여도 신청지 진입도로가 대부분 4미터 이상 7미터까지 폭을 이루고 있고 약 35m 정도만 4미터 이하여서 차량의 통행이나 교행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다)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시점에는 4미터 이하의 폭이던 도로가 4미터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어 더욱 차량의 통행 등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3) 또한 본 신청지 주변에 도로 완화 심의를 받아 4가구가 건축을 신축하여 생활하고 있어 본건 행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4) 건축법 제4조의2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민원인의 이의가 있으므로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 완화 심의 부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익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본인은 음식점 영업(분식점)을 처음 접하는바 개업 후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식당 손님들과 주변 상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재난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시청 담당자가 방문하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임을 알고 즉시 가입하였습니다. 본인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임을 알았다면 보험료도 많지 않은데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음식점(분식점) 개업 후 영업이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어 폐업도 고려 중인 상황에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부디 과태료 부과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자

- 신청인 : 이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과)

2. 결 정

가. 주 문

피신청인은 2025. 4. 14. 신청인에게 부과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이 유

1) 사실관계

- ① 신청인은 2024. 10. 24. 아산시 번영로195번길 8에 식품영업 신고한 후 일반음식점(분식점)을 영업하고 있던 중 2025. 3.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난배상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통지를 받았고 2025. 3. 26.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 4. 14. 피신청인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 ② 피신청인은 영입신고 당시 식품영업 신고서 하단에 일반음식점 100㎡이상시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받고 처리하였으며 2024. 10. 28. 일반 우편발송 및 2024. 10. 30. 통신문자를 통하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한이 2024. 11. 22.까지임을 안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식품영업 신고를 하고 2024. 11. 13. 실손보험(건물화재손실, 건물유리손실, 건물복구, 집기화재손실, 시설물 화재손실 등)을 가입 완료하였고 그 손해 배상액은 재난배상보험 가입액보다 그 보상범위가 큰 것으로 보인다.

- ④ 신청인은 2025. 3. 14. 아산시 위생과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영업점에 들러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와 대상임을 고지하며 의무가입 사항을 안내받고 즉시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피신청인은 2024. 10. 30. 문자 안내 이후 2025. 3. 14. 까지 약 5개월(134일)간 한번도 미가입에 대한 안내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그 사유로 담당 공무원이 3명이 병가 등으로 변경되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별	업 무 기 간	담 당 자	변동 사유
2024. 11. 17.까지	-	신○○ 주무관	병가
2024. 11. 18. ~ 12. 31.	1개월 18일	장○○ 팀 장	임시담당
2025. 1. 1. ~ 3. 9.	2개월 9일	정○○ 주무관	업무변경
2025. 3. 10. ~ 현재	-	석○○ 주무관	-

2) 판 단

① 관련법령 및 규정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② 판단내용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4. 11. 13. 실손 보상형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 손해보상액 또한 재난배상보험금보다 범위가 크다고 보여져 이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신청인은 영업신고 당시 식품영업 신고서 하단에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하고 영업신고 1개월내인 2024. 11. 13. 실손보험형 보험가입을 가입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듯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착각한 단순 착오로 보여진다.
- (3) 또한 피신청인은 2024. 10. 28. 일반우편 및 2024. 10. 30. 통신문자를 통하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한이 2024. 11. 22. 까지 임을 고지하였으나 이후 3명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과태료 부과 시점인 2025. 3. 26. 까지 약 5개월간 어떠한 조치도 없어 과태료 부과액이 과하게 부과되었다.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5)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만 원,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 원,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 원을 더한 금액,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 원에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 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본 건 보험가입 만료기간 10일 이내 피청구인이 최초 부과하였다면 신청인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결되었을 것을 기간 5개월간 전혀 통지가 없다가 5개월이 지나 최대금액인

3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해 보인다.

3) 결 론

- 이 민원 신청인이 실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시 보상에 대비하였고,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에 과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한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에 따른 이의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은 아산시 00동 000-0번지의 70필지 일원에 2022. 2. 22. ①①①① 공동주택 신축 사업 승인받아 2025. 8. 18. 사용 승인 목표로 건축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코자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충청남도청에 협의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는 확정측량 결과 사업 승인부지 일부가 인근 □□아파트 부지와 도로에 포함되어 지상 경계 결정이 부적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로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으니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보완 후 성과 심사 요청하라는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아산시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토지분할)하였으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반려 통보되어 사업기한내 사용승인이 안되면 많은 문제가 있으니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해달라.

나. 당사자

- 신청인 : ①①①①(주)
- 피신청인 : 아산시장(△△△△과)

2. 결 정

가. 주 문

피 신청인은 아산시 00동 000-0번지의 70필지 ①①①① 공동주택 신축지 개발행위 변경 신청 불허가 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이 유

1) 사실관계

- ① 신청인(한신공영“주”)은 2022. 2. 22. 아산시 00동 000-0번지 일원 30,930㎡에 건축면적 99,930㎡에 대하여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603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2. 8. 17. 착공신고하였고 2025. 8. 18. 사용검사 예정으로 추진하여 완공 단계에 있다.
- ② 신청인은 사용검사를 위하여 2025. 5. 14.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 측량(확정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측량결과 사업부지가 2002년 사용승인된 청솔아파트 옹벽 일부 및 도로 등에 필지당 1㎡에서 최대 23㎡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2025. 4. 4. 아산시에서는 충청남도에 ①①①① 주택 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2025. 4. 17.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 부지와 연접한 □□아파트 옹벽 일부가 사업지구내 침범되어 있어「공간정보관리법」제55조 규정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보완 후 성과 검사 하도록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 ④ 이에 신청인은 2025. 5. 13. 부득이 □□아파트에 침범된 부분을 제척하고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25. 5. 14. 개발행위 허가 시 과소 필지가 발생하

여「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5호 및「개발행위운영지침」3-6-3(분할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분할할 수 없다며 개발행위 신청서를 반려 처분 하였다.

- ⑤ 피신청인 아산시는 2002. 7. 30. 00동 000-0번지 외 5필지(□□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옹벽이 있는 문제의 토지 포함 사용 검사를 한 오류가 있어 보인다.

2) 판 단

①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 법률」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4)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5) 「건축법 시행령」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6) 「개발행위 운영지침」3-6-3
- (7)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② 판단내용

- (1) 이 민원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5조제1항 2호에 보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1항 5호 나목에「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제80조 1호에서 4호에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고,「동법 시행령」별표 1의2와「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건은 가목~마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 및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어려워 보임.
- (2)「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할 허가 대상이 되나, 분할신청 토지는 “전”이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 제3항 1호에 의하여 지목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 합병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 (3) 행정행위의 착오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산시는 2002. 7. 30. 신청인의 사업승인지의 일부가 □□아파트의 옹벽에 포함되었는데 사용허가 당시 확정측량 규정이 없어 피신청인은 알 수 없었다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청솔아파트 사용승인 당시 경계 확인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민원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 (4) 이 민원 사업승인대로 시공하려면 신청인의 사업지인 청솔아파트 옹벽 부분은 높이 7미터의 옹벽을 허물어내고 다시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5)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승인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고 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완공단계에 있는데 신청인의 과실없이 확정측량 결과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용승인이 불가능하게 된 사항으로 개발행위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승인을 할수 없게 된다면 입주예정자의 이사 일정 혼선, 임시거주지 마련, 일부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발생 소송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

금 발생, 입주민의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 그러므로 이 민원 2002년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 피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것과, 신청인의 과실이 없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였고 603세대의 계약자들에게 계약 기한 내 입주토록 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있다고 인정되므로「**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의견표명**」하기로 의결한다.

3. 합의조정 사례

주택조합 착공신고 수리요구 (체납과태료 납부기일 연기)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신청인등이 추진하는 000지역주택조합 착공 신고 수리 지연 원인인 광고물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000 지역주택사업 착공 신고 이후에 일괄 납부하도록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

나. 당사자

- 신청인 : ○○○○○○○○ 조합
- 피신청인 : 아산시장(△△△과)

2. 결 론 : 합 의

- 가. 피신청인은 광고물 과태료 납부 기한을 착공 신고 후 중도금 대출기표일 7일 이내 또는 2025. 10. 00. 중 빠른 날짜에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도록 유예하고 000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착공 신고 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과한 000 지역주택사업 관련 체납된 광고물 과태료 전액을 착공 신고 후 위 “가”항에 따른 납부 기한을 준수한다.

소하천부지 불하

1. 고충민원 개요

가. 민원 요지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00 소하천 부지인 충남 아산시 00면 00리 308-2 소재 토지 지상에 적법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70년 이상을 주거 및 경작 용도로 점·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하천 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불하하여 달라는 취지

나. 당사자

- 청 구 인 : 이 ○ ○
- 피신청인 : 아산시장(△△△△과)

2. 결 론 : 합 의

- 가. 신청인은 ‘민원 토지’에 대한 소하천구역결정(변경) 보고서와 아산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다
- 나. 피신청인은 위 “가”항에 따른 보고서와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원회 상정 시 신청인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한다.
-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에 이의 없이 따르고, 향후 ‘민원 토지’ 불하와 관련한 소하천구역결정(변경) 보고서 작성 제반비용(측량비용 포함)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한다.



부록





부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01. 12.] [법률 제20712호, 2025. 0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 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

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 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05. 14. 조례 제1994호
(일부개정) 2025. 08. 14. 조례 제26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시에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또는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산사회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과 같다.

제6조(추천위원회)

-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4.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 1명
 5.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 1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추천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시 또는 소속기관과 규칙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

제10조(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자문기구)

-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을 도모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①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이나 신청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판결, 재결, 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시의회에 관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관 등의 직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 ① 위원회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8. 14.>

- ②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제2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치결과와 통보 등)

- 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 또는 의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활동비)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지원)

-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27조에서 이동, 2025. 8. 14.>

부 칙(조례 제2583호) <개정 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로 본다.

제3조(고충민원 처리의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사안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2647호, 2025.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 07. 15. 규칙 제777호
(전부개정) 2024. 12. 16. 규칙 제9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등)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비 등)

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근무일)

- ①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 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근무 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명서)

-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 및 의견표명)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 서에 따른다.

제9조(고충민원 조사결과와 통보)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0조(조치의 통보)

-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치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현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사무기구 운영)

-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 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공인)

-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비밀유지 서약)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